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제440 호
------	--------

제출년월일: 2004. 3. //.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 기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으로 행정,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조례 제정에 맞추어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급증하는 주민복지 욕구에 탄력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존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여성발전위원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 1개의 위원회 통합 운영하되, 유사한 기능별 분과 위원회를 운용·관리함 (안 제2조)
- 기금 계정과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세분화·전문화 함 (안 제2조)
-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각각 폐지함 (안 부칙 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나. 입법예고 (2004.2.12 ~ 2004.3.3) 결과 의견없음

4. 본문 : 불임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에 관한사항 심의·의결 및 기본계획 수립
2.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
3. 아동복지협의회설치및운용에 관한사항 심의·의결
4. 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1과 같이 유사 기금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에 관한사항
- 나. 기초생활보장기금(자활공동체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용자금) 운용에 관한사항
- 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사항
- 라.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관한사항
- 마.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사항
- 바.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여성정책발전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가.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사항
- 나.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 연구
- 다. 영유아의 보육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라. 아동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사항
 - 마.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노인복지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사항
 - 나. 기타 군수가 심의를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단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④ 여성정책발전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여성단체협의회장
2.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 3명
3.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⑤ 노인복지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등의 직무는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④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수 있다. 간사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9호 및 제14호는 삭제한다.
- ③ (다른 위원회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용자대상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각각 폐지한다.